

강의평가 운영지침

제 정 : 2017. 9. 1.

개 정 : 2020. 6. 15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금강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부 개설과목에 대한 강의평가(이하 “평가”라 한다)를 통해 교수법 및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의 기준 및 절차,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가대상) ①평가는 본교 정규학기에 개설된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
 <개정 2020.06.15.>

②평가는 해당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한다.

제3조(평가지기) 강의평가는 학기에 2회(중간 및 학기말)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0.06.15.>

제4조(평가유형 및 문항) 평가는 이론중심강의, 이론 및 실습 병행 강의, 사이버강의로 구분하여 진행하며, 평가 문항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0.06.15.>

제5조(평가방법) ①평가는 수강생이 직접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.

②평가를 실시한 학생의 익명을 보장하며,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학생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한다.

제6조(평가학생의 의무) ①평가를 실시하는 학생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해야 한다.

②정해진 기간에 평가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 성적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6.15.>

제7조(평가점수) 평가점수는 5점 만점으로 하며, 최상위 10%와 최하위 10%에 해당하는 점수는 반영하지 않는다.

제8조(평가결과의 활용) ①평가결과는 교원업적평가, 승진, 재임용, 다음 학기 수업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6.15.>

②교수자는 강의평가 결과를 본인 강의에 대한 자가평가 및 수강생 의견을 반영한 강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6.15.>

③강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 학기 강의우수교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6.15.>

④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강의평가 결과를 강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수법 개발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6.15.>

⑤ 삭제 <개정 2020.06.15.>

제9조(평가결과의 공개) ①주무부서는 담당교수에게 강의평가 결과를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. <개정 2020.06.15.>

②주무부서는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습 선택권과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의평가 결과를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. 학습자는 강의평가 결과 조희를 통해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6.15.>

제10조(강의평가위원회) ①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의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교학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재임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회의 역할) 강의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.

1. 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2. 강의평가 문항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3. 강의평가 결과 활용 및 환류에 관한 사항
4. 기타 강의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9조②항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지침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2조 ①항, 제3조, 제4조, 제6조 ②항, 제8조, 제9조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